

「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대여료」 보조금 신청 안내문

❖ 개요

-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임업 현장의 사망재해를 예방하고자 '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' 사업을 통해 「벌목작업 전용 보호구 구입비용 및 장비 대여료」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하였습니다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❖ 지원대상 :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*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주

* 「산림기술법」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국유림영림단, 산림사업법인, 원목생산업자
다만, '산림조합중앙회'는 임업장비 대여료 품목은 제외함

❖ 지원한도 :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

❖ 지원품목 및 지급조건

1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 2종(산림작업용 안전모, 톱날베임방지 바지)

구분	산림작업용 안전모	톱날베임방지 바지
지원기준	■ 안전모(산림청 품질인증)에 귀덮개(KCS인증) 및 보안면이 장착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세트로 구성하여 지원	■ 산림청 품질인증 제품
기준가격	■ 최대 45천원	■ 최대 108천원
지원수량	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급	

2 임업장비 대여료 2종(쏘그래플, 하베스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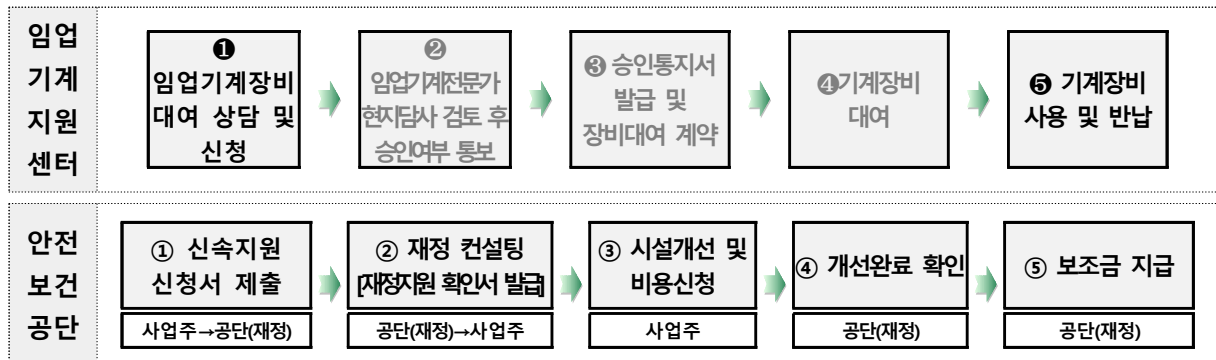
구분	쏘그래플		하베스터	
지원기준	■ 임업기기지원센터의 임업장비 대여사업 연계에 따른 장비			
기준가격	규격	금액(원)	규격	금액(원)
	0.3㎡	360,000	0.4㎡	450,000
	0.6㎡	396,000	0.8㎡	621,000
지원횟수	■ 연 2회 가능(※1회 4개월 이내이며 연장 요청하는 경우 1회 1개월 이내 연장 가능)			

❖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(1 별목작업 전용 보호구)



- ① **신속지원 신청서 제출** : 사업주가 신속지원 신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공단 일선기관으로 방문(fax) 또는 우편 제출
- ② **재정 컨설팅** : 공단 재정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'재정지원 확인서'를 신청자에게 발급
- ③ **시설개선 및 비용신청** : '재정지원 확인서'의 확인결과 신속지원 신청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4개월 이내 투자완료 요청
- 투자완료 요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오프라인(방문 또는 우편)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청
- ④ **개선완료 확인** :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개선완료 현장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

❖ 품목별 신청방법(2 임업장비 대여료)



- <1단계> 사업주가 임기센터의 ① 임업기계장비 대여 상담 및 신청(※접수확인증 발급) 후 공단의 ① 신속지원 신청서<첨부1>를 작성하여 공단 일선기관으로 방문(fax) 또는 우편 제출
- <2단계> 공단의 ② 재정 컨설팅 : 공단 재정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'재정지원 확인서'를 신청자에게 송부 ※ 공단에서 장비 대여기간 중 현장방문 할 수 있음
- <3단계> 임기센터의 ⑤ 기계장비 사용 및 반납 후 공단의 ③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: '재정지원 확인서'의 확인결과 신속지원 신청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4개월 이내* 투자완료 요청
- * 대여 장비 사용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도 ④ 기계장비 대여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투자완료 요청을 하여야 함
 - 투자완료 요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청
- <4단계> 공단의 ④ 개선완료 확인 :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개선완료 현장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후 ⑤보조금 지급

❖ 안내사항

- 보조금 지급대상, 지급절차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」 공고문*에 따름

*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 참조

- 부정수급 예방 안내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**허위로 제출**하거나 **그 밖의 부정한 사항(지급받은 보호구를 재판매하는 행위 등)**이 발견될 경우

- 사업장은 **보조결정이 취소**되고 지급된 **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**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**추가환수금(최대 5배)** 및 **참여제한 조치**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(부정청구등의 죄)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

첨부1

제출서류 양식 및 안내문

① 신청시 제출서류

서류명	별목작업 보호구	임업장비 대여료	별첨 참조
① 「별목작업 보호구 및 임업장비 대여료」 신속지원 신청서	○	○	①p
② 산림사업시행업자 증빙서류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○	○	-
③ 견적서 및 인증서* * 안전모 및 톱날베임방지 바지의 경우 산림청 품질인증서, 귀덮개는 KCS인증서 제출	○	×	-
④ 임업장비 신청 접수증(※임업기계지원센터 발행) 및 사업계획서* * 지자체 등 입목벌채 허가·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자체 작성한 작업계획서(작업목적 및 기간, 작업위치 및 면적, 인력 및 장비운영계획, 안전작업방법, 비상대응 및 교육계획 등 포함)	×	○	-
⑤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(※ 사업주 자필서명)	○	○	②p
⑥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(※ 사업주 자필서명)	○	○	③p

② 투자완료(③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단계)요청시 제출서류

서류명	별목작업 보호구	임업장비 대여료	별첨 참조
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(붙임)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2.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. 3.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.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.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5. 전채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.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	○	○	④p
② 투자완료 증빙사진(임업장비 대여료의 경우 별목작업 현장 작업 전/중/후 사진 대지 제출)	○	○	⑤p
③ 지급보증보험 증권 <비고 참조>	○	×	⑥p
④ 실거래 전자 세금계산서 5건(※ 소요금액 500만원 초과 시 제출) <비고 참조>	해당시	×	⑦~ ⑩p
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○	○	⑪p
⑥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제작·판매업체 등)(※ 사업주 자필서명)	○	○	⑫p
⑦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※ 사업주 자필서명)	○	○	⑬p
⑧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(※ 사업주 자필서명)	○	○	⑭p

<비고>

▶ ③ 지급보증보험 증권(보조금 지급대상자→공단)

- 보험기간 :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2년으로 적용
- 가입금액 : 보조 결정금액 이상

▶ ④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 이상)를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,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, 거래사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

③ 부정수급 사례 및 문의사항

- ① 취소·환수 관련 주요 사례 <별첨 ⑮p 참조>
- ② 공단 일선기관별 안내처 <별첨 ⑯p 참조>

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안내 2026년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



신청 QR 코드

1 사업개요

- ✓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·감독, 공단의 기술지도·민간위탁사업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
2 지원대상

- ✓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1. 50인 미만 중소기업장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)
 2.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 3.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
지원제외 대상

- | | | |
|--|--|---|
| 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| ✓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| ✓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|
|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(보조금 부정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| ✓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·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| ✓ 당해연도 고위험개선 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|
- ✓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)

3 지원금액 및 절차

- ✓ 지원금액 :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, 당해연도 1회에 한함)
- ✓ 지원절차

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✓ 기간 : '26. 1. 2. (금) ~ 재원 소진 시까지('26년 재원 272.4억원)
- ✓ 방법 :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✓ 온라인 신청 매뉴얼

산업안전포털
(portal.kosha.or.kr)

지원사업 신청

안전일터조성지원
(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)

자료실
문의 1544-3088

5 지원품목

- ✓ 지정품목 :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(33종)
- ✓ 자율신청품목 :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
(※현장확인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)

□ 사업 개요

-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산림작업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산주 및 임업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드리는 사업

※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□ 대여 절차



□ 대여 장비

- 숲가꾸기·벌목장비 : 기계톱, 예불기, 고지절단기, 자동지타기 등
- 집재장비 : 타워야더, 스윙야더, 트랙터집재기, 소형집재기 등
- 운반장비 : 포워더, 트럭, 그래플러적재함 등
- 상하차 장비 : 굴삭기(우드그랩 포함), 크레인

□ 대여 수수료 및 문의

- 시중의 대여료를 감안하여 센터별로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문의

기관명	소재지	연락처	
중부목재사업본부	경기 여주시	1588-1398	
양산교육원	경남 양산시	055)382-7247	
강릉교육원	강원 강릉시	033)662-5442	
진안교육원	전북 진안군	063)433-6885	
평창군산림조합	강원 평창군	033)333-4122	
청주산림조합	충북 청주시	043)297-4236	
산청군산림조합	경남 산청군	055)973-4400	

첨부 4

「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」 제도 및 인증제품 안내

□ 사업 개요

- 우수한 성능의 기계·장비 사용을 통한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

※ 「임업진흥법」 제18조의12(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) 같은법 제18조의15(품질인증기관의 지정)

□ 인증제품 현황(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품목)

- 산림작업 안전모 : 내구성 및 시인성, 현장시험(착용성)

※ 보안면귀덮개는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품과 호환되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고시 제품으로 구성

- 산림작업복 하의 :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보호영역 수축률 측정

산림작업 안전모				산림작업복 하의			
모델명 (인증번호)	제품 사진	업체명	연락처	모델명 (인증번호)	제품 사진	업체명	연락처
HS005 (2023-008-001 A-001)		유비통상(주)	02-742-8588	CLASSIC PROTECTIVE TROUSERS (2023-008-003 A-001)		(주)우창통상	02-3461-1691
SAHM-2105-1 (2023-008-001 A-002)		(주)성안세이브	051-853-3200	HA 529 51 89- (2023-008-003 A-002)		(주)경진이레	1577-6310
SAHM-1326 (2024-008-001 A-001)		(주)성안세이브	051-853-3200	스플리터-II (2024-008-003 A-001)		근창	1588-7304
SAHM-2101-1 (2024-008-001 A-002)		(주)성안세이브	051-853-3200	HA-330 (2024-008-003 A-002)		(주)자유상사	051-312-8246
HS-A704ab-A_ 노랑 (2025-008-001 A-001)		(주)한성세이프티	02-821-1665	아라미드 임업팬츠 (2025-008-003 A-001)		(주)케이투세이프티	02-3294-8608
HS-A704ab-A_ 주황 (2025-008-001 A-002)		(주)한성세이프티	02-821-1665	AT034 (2025-008-003 A-002)		유비통상(주)	02-742-8588

□ 문의사항

-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담당자(T.042-719-1443)